Ⅰ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현황 개요

1. 비과세·감면 총괄표

(단위: 원, %)

구 분		'16년(결산)
비과세·감면액(A)		137,484,747,810
	비과세	46,408,670,090
	감면	91,076,077,720
지방세 징수액(B)		1,010,895,572,210
비과세·감면율(A/A+B)		12

2. 기능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분 야		'16년(결산)	비중
총 계		137,484,747,810	100
1	일반공공행정	18,569,028,420	13.5
2	공공질서 및 안전	18,698,160	0
3	교육	4,404,519,910	3.2
4	문화 및 관광	4,776,084,220	3.5
5	환경보호	800,100,590	0.6
6	사회복지	15,668,409,180	11.4
7	보건	19,295,350	0
8	농림해양수산	12,469,089,640	9
9	산업·중소기업	12,922,597,570	9.4
10	수송 및 교통	8,555,603,640	6.2
11	국토 및 지역개발	28,449,930,670	20.7
12	과학기술	3,012,400	0
13	국가	10,660,199,410	7.8
14	외국	29,020	0
15	기타	20,168,149,630	`14.7

3. 세목별 비과세·감면 현황

(단위: 원, %)

분 야			'16년(결산)	비중
총 계			137,484,747,810	100
	보통세		131,881,043,100	96
		취득세	126,951,289,820	92
		등록면허세	4,929,753,280	4
	목적세		5,603,704,710	4
		지역자원시설세	5,590,100,970	4
		지방교육세	13,603,740	0

4. 비과세·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

(단위: 원)

감 면 유 형	'15년(결산)	'16년(결산)	증감액
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	15,813,906,690	17,401,301,880	1,587,395,190
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974,915,640	370,636,620	△604,279,020
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	907,358,360	603,079,040	△304,279,320
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	505,065,960	609,556,850	104,490,890
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	2,741,084,450	3,047,467,570	306,383,120
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	769,346,620	736,567,710	△32,778,910
종교,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	2,394,959,140	3,438,050,470	1,043,091,330
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	10,804,490	7,996,400	△2,808,090
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	933,132,980	1,329,946,180	396,813,200
체육진흥을 위한 감면	235,349,530	0	△235,349,530
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	551,802,060	799,953,090	248,151,030
장애인에 대한 감면	3,566,662,640	3,542,269,750	△24,392,890
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	478,536,560	334,481,610	△144,054,950
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	2,798,051,600	2,353,327,810	△444,723,790
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	534,456,730	227,619,690	△306,837,040
주택거래에 대한 감면	321,053,330	215,426,380	△105,626,950
임대주택에 대한 감면	3,599,044,520	7,882,006,580	4,282,962,060

감 면 유 형	'15년(결산)	'16년(결산)	증감액
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	591,355,220	19,295,350	△572,059,870
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	9,400,000	0	△9,400,000
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	4,973,632,920	5,498,808,250	525,175,330
농업법인에 대한 감면	1,261,771,780	1,699,094,310	437,322,530
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	1,279,090,580	1,264,106,110	△14,984,470
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	3,304,910,980	1,630,245,740	△1,674,665,240
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	2,290,497,100	2,135,348,920	△155,148,180
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	199,039,530	195,437,830	△3,601,700
법인·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	217,736,870	81,703,860	△136,033,010
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	89,380,160	1,103,957,890	1,014,577,730
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	5,803,122,490	6,242,729,550	439,607,060
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	163,955,320	1,901,360	△162,053,960
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	5,038,143,230	4,983,872,190	△54,271,040
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	1,720,044,880	2,722,749,960	1,002,705,080
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	1,177,507,740	839,520,130	△337,987,610
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1,103,492,940	643,476,130	△460,016,810
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	1,717,595,770	272,730,830	△1,444,864,940
산업단지에 대한 감면	16,358,054,980	22,638,653,180	6,280,598,200
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	9,216,422,520	3,889,051,340	△5,327,371,180
기업도시에 대한 감면	2,128,851,320	1,006,019,190	△1,122,832,130
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	1,519,000,140	0	△1,519,000,140
국가에 대한 비과세	15,895,604,860	7,828,311,000	△8,067,293,860
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10,965,660	24,551,840	13,586,180
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509,613,980	2,826,563,210	2,316,949,230
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	92,503,335,460	11,602,267,280	△80,901,068,180
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	1,368,654,150	1,401,980,850	33,326,700
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	5,870,823,380	6,683,439,660	812,616,280
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	121,927,040	68,334,280	△53,592,760

Ⅱ. 지방세 비과세·감면 항목별 세부내역

1. 일반공공행정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 세 목	'16년(결산)
	일반공공행정	**합 계**	18,569,028,420
1	**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** -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145① 1호, §145②)	**소 계**	17,401,301,880
		취 득 세	15,309,668,680
		등록면허세	81,011,250
		지역자원시설세	2,010,621,950
2	**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**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	**소 계**	370,636,620
		취 득 세	370,636,620
3	**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** 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45②)	**소 계**	461,830
		지역자원시설세	461,830
4	**정당에 대한 비과세** - 정당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9①·②·③)	**소 계**	185,940
		등록면허세	34,000
		지역자원시설세	151,940
5	**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**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, 지방세특례제한법 §90①, §90②)	**소 계**	193,342,220
		취 득 세	139,898,500
		등록면허세	1,445,500
		지역자원시설세	51,998,220
6	**사유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비과세** -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45②)	**소 계**	20,890
		지역자원시설세	20,890
7	**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** - 지방공사·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①②) -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,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세 감면(5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③) -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(50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5의2④)	**소 계**	603,079,040
		취 득 세	177,635,660
		등록면허세	425,443,380

2. 공공질서 및 안전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공공질서 및 안전	**합 계**	18,698,160
8	**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** - 천재·지변·소실·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레저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④, §92① 1호, §92②)	**소 계**	18,698,160
		취 득 세	18,106,200
		등록면허세	15,000
		지역자원시설세	576,960

3. 교육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교 육	**합 계**	4,404,519,910
9	**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** 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145① 1호, §145②)	**소 계**	609,556,850
		취 득 세	427,126,960
		등록면허세	2,805,500
		지역자원시설세	179,624,390
10	**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** -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45②)	**소 계**	200
		지역자원시설세	200
11	**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** -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①, §41②, §41③, §41⑤) -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,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·실습용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입목·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2①, §42②, §42③) -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⑥) -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(한의과대학,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)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§41⑦)	**소 계**	3,047,467,570
		취 득 세	2,496,287,760
		등록면허세	2,076,000
		지역자원시설세	549,103,810
12	**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3①, §43②, §43③, §44)	**소 계**	10,927,580
		지역자원시설세	10,927,58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13	**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** -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①) -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5②	**소 계**	736,567,710
		취 득 세	711,677,520
		지역자원시설세	24,890,190

4. 문화 및 관광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문화 및 관광	**합 계**	4,776,084,220
14	**종교·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** - 종교·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§50①, §50②, §50③) -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④)	**소 계**	3,438,050,470
		취 득 세	2,921,999,510
		등록면허세	1,951,000
		지역자원시설세	514,099,960
15	**종교·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** - 종교·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50④)	**소 계**	89,100
		지역자원시설세	89,100
16	**문화·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** -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①) - 도서관에 관한 등기·등록에 대해서 취득·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52②) -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용 부동산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)	**소 계**	7,996,400
		취 득 세	325,140
		지역자원시설세	7,671,260
17	**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** -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54①)	**소 계**	1,329,946,180
		취 득 세	1,329,946,180
18	**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	**소 계**	2,070
		지역자원시설세	2,070

5. 환경보호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환경보호	**합 계**	800,100,590
19	**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** -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% 감면((지방세특례제한법 §48) -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53)	**소 계** 취 득 세	147,500 147,500
20	**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** - 녹색건축물인증 등급,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세 5~1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①) -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5~1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2②) -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~1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3①) -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47의4①)	**소 계** 취 득 세	799,953,090 799,953,090

6. 사회복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사회복지	**합 계**	15,668,409,180
21	**장애인에 대한 감면** -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 1~3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 - 시각장애(4급)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조례)	**소 계** 취 득 세	3,542,269,750 3,542,269,750
22	**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** -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,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의2)	**소 계** 지역자원시설세	66,680 66,680
23	**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** - 사회복지법인, 양로원·보육원·모자원·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①, §22②, §22③, §22⑤) -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등록면허세 50%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4)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⑥)	**소 계**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	334,481,610 255,494,430 1,541,100 77,446,08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24	**사회복지법인·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** -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④)	**소 계** 지역자원시설세	152,580 152,580
25	**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** -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9) -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2의2①, §22의2②)	**소 계** 취 득 세	2,353,327,810 2,353,327,810
26	**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** -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경로당용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1호) - 양로시설,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0 2호)	**소 계** 취 득 세 지역자원시설세	227,619,690 225,276,040 2,343,650
27	**권익증진을 위한 감면** - 대한적십자사·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3 1·3호) - 법률구조공단 및 「법률구조법」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3 2호)	**소 계** 취 득 세	16,510,130 16,510,130
28	**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** -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25②)	**소 계** 등록면허세	560,800 560,800
29	**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①)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29②, §29③) -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,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7①)	**소 계**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	912,685,740 910,356,710 56,500 2,272,530
30	**주택거래에 대한 감면** - 40㎡이하·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3②) -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40의2)	**소 계** 취 득 세	215,426,380 215,426,380
31	**임대주택에 대한 감면** -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	**소 계**	7,882,006,58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부동산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①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㎡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④) -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2①) -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2①, §31의2②) -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3) - 부동산투자회사(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)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의4)	취 득 세	7,416,862,980
		지역자원시설세	465,143,600
32	**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** -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5①)	**소 계**	160,008,000
		등록면허세	160,008,000
33	**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** -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6)	**소 계**	23,293,430
		취 득 세	23,293,430

7. 보건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보건		**합 계**	19,295,350
34	**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①) -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38③)	**소 계**	19,295,350
		취 득 세	19,286,350
		등록면허세	9,000

8. 농림해양수산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농림해양수산		**합 계**	12,469,089,640
35	**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** - 농업인의 농지·임야,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, 도로·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) -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,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) -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②)	**소 계**	5,498,808,250
		취 득 세	5,459,459,750
		등록면허세	39,348,500
36	**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** -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①) -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④)	**소 계**	3,308,660
		취 득 세	3,308,660
37	**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** - 농업인·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① 1호) -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① 2호) -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,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·시설물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1호) -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2호) -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3호) -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4호) -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3② 5호	**소 계**	1,427,397,170
		취 득 세	1,427,397,170
38	**농업법인에 대한 감면**	**소 계**	1,699,094,31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-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, 영농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50% 감면,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1)	취 득 세	1,471,867,270
		등록면허세	227,227,040
39	**임업인에 대한 감면** -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, 99만㎡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③)	**소 계**	75,356,430
		취 득 세	75,356,430
40	**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** -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①) 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②) -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, 어업권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③)	**소 계**	16,224,520
		취 득 세	15,098,730
		등록면허세	18,000
		지역자원시설세	1,107,790
41	**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** - 어업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①) -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2②)	**소 계**	7,493,250
		취 득 세	6,443,250
		등록면허세	1,050,000
42	**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**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·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감면(75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0①1~5)	**소 계**	1,500,119,670
		등록면허세	1,500,119,670
43	**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**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①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②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③) - 농업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가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25%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14의2)	**소 계**	1,437,442,820
		취 득 세	1,437,442,820
44	**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**	**소 계**	802,244,56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·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㎡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16)	취 득 세	802,244,560
45	**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** -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,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,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감면(조례)	**소 계**	1,600,000
		취 득 세	1,600,000

9. 산업 · 중소기업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산업 · 중소기업	**합 계**	12,922,597,570
46	**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**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,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 ①·③) 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,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0③ 1·2호)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·등록면허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②)	**소 계**	1,264,106,110
		취 득 세	1,242,073,110
		등록면허세	22,033,000
47	**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** -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·재산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6①) - 시험분석·연구용 담배,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54① 6·7호) - (광주, 북구·광산구)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면제	**소 계**	34,595,500
		취 득 세	34,595,500
48	**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** -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28②)	**소 계**	1,229,910
		취 득 세	1,229,910
49	**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**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·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①)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·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세 대도시 중과 배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②)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산업기술단지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③) 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④) - 산업지식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	**소 계**	195,437,830
		취 득 세	143,227,95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재산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2) -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 - 고용창출기업(고용우수)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	등록면허세	52,209,880
50	**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** -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,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121의2)	**소 계**	231,604,260
		취 득 세	231,604,260
51	**법인·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** -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·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9·§80)	**소 계**	81,703,860
		취 득 세	80,128,860
		등록면허세	1,575,000
52	**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** -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,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1) -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	**소 계**	1,103,957,890
		취 득 세	1,103,957,890
53	**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** - 광업권의 설정·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①) -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2②)	**소 계**	1,638,000
		등록면허세	1,638,000
54	**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자동차·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·기계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①) -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·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8②)	**소 계**	6,242,729,550
		취 득 세	6,242,729,550
55	**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** - 금융기관의 기업합병·분할등을 위한 취득·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⑤ 1,2,4,5,6,7호) -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「한국정책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.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⑦) - 금융기관, 한국자산관리공사, 예금보험공사, 정리금융기관, 농협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	**소 계**	1,630,245,740
		취 득 세	109,410,540
		등록면허세	1,520,835,2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제한법 §57의3①1·2·3·4호)		
56	**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**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·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2④) -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,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57의3②)	**소 계**	2,135,348,920
		취 득 세	2,135,348,920

10. 수송 및 교통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수송 및 교통	**합 계**	8,555,603,640
57	**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** -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①) -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7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②) -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면허세 감면(100%)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④) 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·등록면허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④)	**소 계**	1,901,360
		취 득 세	1,901,360
58	**해운·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** -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4①) - 화물운송용·외항여객운송용·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4②) -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시행령 §137①)	**소 계**	2,500,000
		취 득 세	2,500,000
59	**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** -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65)	**소 계**	5,060,000
		취 득 세	5,060,00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60	**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** - 경형 승용·승합·화물차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7①·②)	**소 계**	4,983,872,190
		취 득 세	4,983,872,190
61	**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** -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(취득세액 140만원 한도) 및 공제(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)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③) -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(취득세액 140만원 한도) 및 공제 (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④)	**소 계**	2,722,749,960
		취 득 세	2,722,749,960
62	**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** -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(50%) 및 등록면허세 감면(75%) 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①) 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70③)	**소 계**	839,520,130
		취 득 세	839,520,130

11. 국토 및 지역개발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국토 및 지역개발	**합 계**	28,449,930,670
63	**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** -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·수용·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3①)	**소 계**	643,476,130
		취 득 세	643,476,130
64	**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** -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6①·②)	**소 계**	272,730,830
		취 득 세	272,730,830
65	**산업단지에 대한 감면** -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①) -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·조성 후 분양·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②) -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·증축시 취득세 3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78③) - 농공단지 내 휴·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(조례) -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 시 취득세	**소 계**	22,638,653,180
		취 득 세	22,638,653,18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75%감면, 대수선시 40%감면(조례)		
66	**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** 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·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81①②) 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.5~100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1③)	**소 계**	3,889,051,340
		취 득 세	3,719,213,340
		등록면허세	169,838,000
67	**기업도시에 대한 감면** -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세 면제(조례)	**소 계**	1,006,019,190
		취 득 세	1,006,019,190

12. 과학기술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과학기술	**합 계**	3,012,400
68	**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** - 과학관에 대한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44)	**소 계**	3,012,400
		취 득 세	2,934,370
		지역자원시설세	78,030

13. 국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국 가	**합 계**	10,660,199,410
69	**국가에 대한 비과세** - 국가에 대한 취득·등록면허·지역자원시설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145① 1호)	**소 계**	7,828,311,000
		취 득 세	5,542,999,540
		등록면허세	631,689,060
		지역자원시설세	1,653,622,400
70	**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** -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②)	**소 계**	2,826,563,210
		취 득 세	2,826,563,210
71	**국가가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** 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45②)	**소 계**	5,325,200
		지역자원시설세	5,325,200

14. 외국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외 국	**합 계**	29,020
72	**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** -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.등록면허.주민.재산.지역자원시설.지방소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①, §26①, §77① 2호, §90, §109①, §145②) - 주한외교기관,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26 3호)	**소 계**	29,020
		취 득 세	29,020

15. 기타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기 타	**합 계**	20,168,149,630
73	**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** - 임시 흥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·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⑤, §109③ 3호, §145②)	**소 계**	31,534,540
		지역자원시설세	31,534,540
74	**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** -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③ 1,2,3호) -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⑥)	**소 계**	11,602,267,280
		취 득 세	11,602,267,280
75	**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**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9④, §15① 1호, 지방세특례제한법§73③)	**소 계**	24,551,840
		취 득 세	24,551,840
76	**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** -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5① 2호)	**소 계**	1,401,980,850
		취 득 세	1,401,980,850
77	**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** -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5① 3·4호) -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	**소 계**	6,683,439,66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등기·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1호)	취 득 세	6,683,439,660
78	**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** -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세율 특례 (지방세법 §15① 5호)	**소 계**	1,703,850
		취 득 세	1,703,850
79	**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** -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5① 6호) -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3③) 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②) 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2·4호) 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② 4호) 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66①)	**소 계**	337,674,650
		취 득 세	254,751,150
		등록면허세	82,923,500
80	**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** -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, 도관시설, 급·배수시설,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137①)	**소 계**	93,910
		지역자원시설세	93,910
81	**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** -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(지방세특례제한법 §72②·③1호)	**소 계**	652,030
		지역자원시설세	652,030
82	**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** -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	**소 계**	68,334,280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원)	
		세 목	'16년(결산)
	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%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§87① 2호, §87② 2호)	취 득 세	68,334,280
83	**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** -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(지방세특례제한법 §92의2)	**소 계**	15,916,740
		등록면허세	2,291,400
		지방교육세	13,603,740
		지역자원시설세	21,600